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0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2일
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문성호, 박중화, 신동원,
옥재은, 윤영희, 이민석,
이병운, 이종태, 장태용,
허·훈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의 문화향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임.
- 이에 청소년, 청년, 장애인,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미혼남녀가 문화향유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향수 및 창의력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3조제4호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시민”을 “청소년, 청년, 미혼남녀, 장애인, 노인 등 시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업무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</u></p> <p>5. · 6. (생 략)</p>	<p>제3조 (업무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청소년, 청년, 미혼남녀, 장애인, 노인 등 시민</u>----- --</p> <p>5. · 6.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1200000006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이종배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2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업무)제4호의 시민을 청소년, 청년, 미혼남녀, 장애인, 노인 등 시민으로 구체화한 개정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